

# 국제위원회 규정

<2012. 1. 1. 제정>

<2015. 1. 1. 개정>

<2017. 1. 1. 개정>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사단법인 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(이하 “학회” 라 한다)의 국제 학술 교류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업무)**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회에서 주관 또는 참여하는 국제 기술 및 정보 교류에 관련된 기획, 진행, 관리, 지원 업무
2. 국외의 본 학회 회원의 학술활동 및 상호교류에 대한 지원 업무
3. 기타사항

**제3조(구성)**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간사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

**제4조(위원장)**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, 학회 부회장 또는 이사로 보한다.

**제5조(간사)**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, 학회 이사로 보한다. 간사는 최대 2명까지 둘 수 있으며,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중 1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위원)** 위원은 위원회 업무의 전문적이며 원활한 수행을 담당하며, 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

**제7조(회의)** 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,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,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.

## 부 칙

1.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정)
2.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